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심장질환 ⑥**

### 급성심근경색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2. 25 선고, 92구7049 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9조의 6, 제9조의 8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 판결요지

택시운전기사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야간근무를 마치고 사내 택구장에서 택구를 친 후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판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

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망부인 소외 안○화는 1942. 7. 16생 (사고당시 만 49세)으로서 1986. 10. 28. 택시운수업체인 D홍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조로 1991. 5. 3. 17:30경 차량을 출고하여 다음

날인 1991. 5. 4. 03:00경까지 정상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입고시켰다.

나. 안○화는 그날 05:00경 차량을 입고시킨 동료기사 이○섭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06:00경부터 08:00경까지 회사 사옥 본관 3층에 있는 직원용 탁구장에서 탁구를 친 후 다른 팀과 교대하여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09:20경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 이○섭 등 동료기사들에 의하여 발견되어 H동부병원을 거쳐 09:40경 B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B병원에 도착하기전 이미 사망하였다.

다. B병원에 도착당시 촬영된 방사선 사진 소견상 폐울혈 소견 및 심비대 소견을 보여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이 추정되었으며, 달리 위 사안을 좌우할 만한 다른 소견이 없었다.

라.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및 제9조의 8 규  
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1. 6. 24.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 2. 처분의 적법성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망인의 정확한 사인 자체가 미상이고 원인미상의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된 상태에서 사적행위인 과격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을 얻게 되었으며, 과로가 겹쳐 갑자기 심근경색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와 같이 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섭의 증언, 의료법인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망인과 같은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주간반의 경우는 06:00부터 15:00까지, 야간반의 경우는 16: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다가 1주 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신체적 부조화로 인하여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교통량이 폭주하는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사고의 위험 속에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받게 되는 고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2) 망인은 1988. 7. 14. 실시된 정기검진에서 신장질환 및 당뇨병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변비로 고생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는 하였으나 업무의 수행에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도 양호한 편이었다.

(3) 회사는 평소 직원들의 긴장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옥에 탁구장을 마련하여 24시간 개방하고 직원들이 여기를 선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

여 왔으며, 망인은 당일 일과를 마친 후 그곳에서 동료직원들과 가볍게 2시간 남짓 탁구를 즐겼을 뿐 무리한 운동을 한 일은 없었다.

(4)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산소와 영양등)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병변(죽상경화증, 혈전증, 선천성 기형)에 의하여 심근 자체로의 혈류공급이 중단되어 심근의 혼혈성 고사 및 용해가 초래되어 심장의 갑작스런 기능부전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치사율은 25% 정도이며, 관상동맥의 협착을 가져오는 질환(죽상경화증, 혈전증 등)에 동반된 산소요구량의 증가가 발병원인이 고,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될 수 있으며, 고혈압인 경우 비고혈압 대조군보다 약 5배, 당뇨병 환자인 경우 비당뇨병 대조군보다 최소 2배의 심근경색빈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의학상 인정되고 있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 망인이 종사한 업무가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친 영향,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당일행적과 드러난 외부증상 및 병원 후송 경위, 추정된 사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의 기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당뇨병이 겹쳐 있었으며, 업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그것이 유인이 되어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